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3-26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정1281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류경환(기소), 현승헌(공판)
판 결 선 고	2026. 2.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0. 5.경 서울 송파구 B건물, 2층에 있는 'C' 미용실에서 피해자 D의 저작물인 각 헤어미용 포트폴리오 사진파일 4개를 피해자의 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3-26

가나 동의 없이 수회에 걸쳐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하여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캡쳐 사진, 헤어미용 포트폴리오 제작 사진, 블로그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길호 _____